2017년도 제1차
이사회 회의록

* 일시 : 2017년 3월 14일 (15:00~16:10)
* 장소 : 사회복지법인 에덴 평강의집 다목적실
(사천시 곤양면 상평길 145)

사회복지법인 에덴

원본대조필 ㊞

2017년도
제1차 이사회 회의록

1. 소집통지 2017. 3. 3.

2. 회의일시 2017. 3. 14. (15:00 ~ 16:10)

3. 회의장소 평강의집 다목적실 (사천시 곤양면 상평길 145)

4. 참석인원 재적이사 7명 중 5명 / 감사 1명

◇ **이사** 대표이사 홍 혜, 이사 김 순, 이사 최 성, 이사 ㅈ 애, 이사 박 철

◇ **감사** 감사 이 영

5. 참관인원 4명

평강의집 원장, 새로힘장애인보호작업장 원장,
평강의집 사무국장,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주무관

6. 부의안건

안건	부 의 내 용	의결결과
제1호	■ 임원(감사) 선임 관련 사항 ○ 근거 : 사회복지사업법 제20조(임원의 보충)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(임원 등) ○ 사유 : 전임 감사(김 언님) 임기만료	원안가결 (백 현 임명)
제2호	■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○ 근거 : 사회복지사업법,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 준용 ○ 사유 : 법령에 위배된 법인 정관 정비	원안가결
제3호	■ 2016년도 법인회계 결산사항	원안가결
제4호	■ 2016년도 평강의집 시설회계 결산사항	원안가결
제5호	■ 2016년도 새로힘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회계 결산사항	원안가결
	○ 근거 -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 제19조(결산서의 작성 제출) -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 제42조(감사) - 사회복지법인 에덴 정관 제12조 규정(사업실적 및 결산)	

원본대조필 ㊞

7. 회의내용

■ 개회선언 — 2017년도 제1차 사회복지법인 에덴 이사회 개회를 선언하다.

■ 성원보고 — 재직이사 7인 중 5명, 감사 1인이 참석하여 성원됨을 보고하다.

■ 인사말씀 (대표이사) — 개의선언과 대표이사의 인사

■ 업무 및 감사보고

◇ 평강의집 사무국장 — 법인과 시설의 운영 등 전반적인 업무사항을 보고 드리다.
- 중증장애인시설 건축공사 미 정산에 따른 보조금 교부 결정 일부 취소 및 반환처분 행정소송, 2017년 1월 23일 박종연 법률사무소에 의뢰,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소장 접수.
- 2017. 1. 25. 법인·시설회계 결산 감사 진행 함.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 제19조 1항 및 사회복지법인 에덴 정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법인 및 시설 감사 결과에 대하여 결산서 등 회계 처리는 투명성과 정확성, 적정성 있게 집행하였다고 보고하다.

■ 안건상정

제1호 의안 : 임원(감사) 선임 관련 사항

◇ 대표이사 황 혜 — 심의 제1안건으로 임원(감사) 선임 관련 사항 상정하다.

◇ 평강의집 사무국장 — 2017. 1. 27일부로 법인 감사 임기 만료(이: 영 감사 연임 승낙. 김 건 감사 퇴임) 사회복지사업법 제20조(임원의 보충) 및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(임원 등)에 따라 감사(백봉현(1976. 02. 15.生/고성읍)) 선임 관련 결격사유 부존재하다고 설명하다.

◇ 이 사 박 철 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근거를 묻다.

◇ 대표이사 황 혜 — 범죄 전력조회 및 신원조회에서 결격사유 부존재임을 확인함.

◇ 이 사 김 순 — 임원(감사) 선임에 문제가 없다. 백 현님을 감사로 임명 동의하다.

원본대조필 (인)

◇ 이 사 박 철 재청하다.

◇ 대표이사 황 혜 이사 동의와 재청에 의해 백봉현님을 감사 임명에 대한 심의, 가결됨을 선언하다.

제2호 의안 : 정관 변경 관한 사항

◇ 대표이사 황 혜 심의 제2안건으로 정관 변경 관한 사항 상정하다.

◇ 평강의집 사무국장 정관 개정 사항을 설명하다.

변경 전 정관 조문	변경 후 정관 조문	개정 사유
제11조 (사업계획 및 예산) 이 법인의 매회계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대표이사가 매회계년도 개시 1월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~	제11조 (사업계획 및 예산) 이 법인의 매회계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대표이사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 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~	-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 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 준용
제12조 (사업실적 및 결산) "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규칙(보건복지부령)"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	제12조 (사업실적 및 결산) "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규칙(보건복지부령)"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3월 31일 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	
제17조 (임원선임의 제한) ① 이 법인은 이사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 ②<신설>	제17조 (임원선임의 제한) ① 이 법인은 이사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의 규정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"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"가 아니어야 한다.	-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,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규정 준용
제20조 (임원의 해임) ① ~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해임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.	제20조 (임원의 해임) ① ~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시·도지사의 해임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.	- 사회복지사업법 2011년 개정
제27조 (이사회의 소집 등)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하고,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. ④ 대표이사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	제27조 (이사회의 소집 등)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하고,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와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에 소집한다. ④ 대표이사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	-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(이사회의 소집) 규정에 준용
제28조 (이사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) 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②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.	제28조 (이사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) 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② 이사회의 의사는 대리인이나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.	-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의거 내용 명확화 - 오타 수정
제30조 (이사회 회의록) ② 의사록에는 ~,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. ③ 대표이사는 의사록을 법인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.	제30조 (이사회 회의록) ② 의사록에는 ~, 기명·인감 날인하여야 한다. ③ 회의록은 회의일 부터 10일 이내에 법인 홈페이지와 주무관청에서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하며, 법인 사무실에도 비치하여야 한다.	-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(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) 2012년 신설 - 내용 명확화
	정관 < 표 4 : 임원명단 >	- 감사 선임에 따른 변경

원본대조필 ㊞

◇ 이 사 김 순 「사회복지사업법」 및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등 법령에 위배된 법인 정관은 정비해야 됨.

◇ 이 사 박 철 상위법이 그러면 개정해야 된다고 보다.

◇ 참석이사 전 원 원안대로 받기를 원하다.

◇ 대표이사 황 혜 참석이사 만장일치, 정관 변경 안건 가결됨을 선언하다.

제3호 의안 : 2016년도 법인회계 결산 사항

◇ 대표이사 황 혜 제3안건으로 2016년도 법인회계 결산 사항에 대한 심의 안건을 상정하다. 평강의집 사무국장에게 설명요구하다.

◇ 평강의집 사무국장 2016년도 법인회계 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하다.

▣ 결산총괄표

(단위 : 원)

세입					세출				
관	항	예산액	결산액	증감액	관	항	예산액	결산액	증감액
입소자 부담금수입	입소비용 수입	0	0	0	사무비	인건비	7,000,000	6,247,850	752,150
사업수입	사업수입	0	0	0		업무추진비	900,000	245,000	655,000
과년도수입	과년도수입	0	0	0		운영비	14,636,380	11,246,760	3,389,620
보조금수입	보조금수입	4,200,000	3,900,000	300,000	재산조성비	시설비	228,603,470	49,871,380	178,732,090
후원금수입	후원금수입	48,000,000	45,296,280	2,703,720	사업비	운영비	0	0	0
요양급여 수입	요양급여 수입	0	0	0		교육비	0	0	0
차입금	차입금	0	0	0		사업비	0	0	0
전입금	전입금	0	0	0	전출금	전출금	15,712,000	0	15,712,000
이월금	이월금	214,631,850	36,187,955	178,443,895	과년도지출	과년도지출	0	0	0
잡수입	잡수입	55,000	12,715	42,285	잡지출	잡지출	0	0	0
					예비비 및 기타	예비비 및 기타	35,000	0	35,000
세입 합계		266,886,850	85,396,950	181,489,900	세출합계		266,886,850	67,610,990	199,275,860
2017년 이월금 : 85,396,950원 – 67,610,990원 = 17,785,960원									

◇ 대표이사 황 혜 법인회계 결산관련 이사에게 질의나 의견을 요구하다

◇ 이 사 박 철 원안대로 받기에 동의하다.

◇ 이 사 김 순 재청하다.

◇ 대표이사 황 혜 2016년도 법인 회계 결산 사항에 대한 심의 가결됨을 선언하다.

원본대조필 인

제4호 의안 : 2016년도 평강의 집 시설회계 결산 사항

◇ **대표이사 황 혜** 제4안건으로 2016년도 평강의 집 시설회계 결산 사항에 대한 심의 안건을 상정하다. 제4안건 내용에 대해 평강의집 사무국장으로 설명요구하다.

◇ **평강의집 사무국장** 2016년도 평강의 집 시설회계 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하다.

▣ **결산총괄표**

(단위 : 원)

세 입					세 출				
관	항	예산액	결산액	증감액	관	항	예산액	결산액	증감액
입소자부담금수입	입소비용수입	0	0	0	사무비	인건비	1,061,935,000	1,024,218,113	37,716,887
사업수입	사업수입	0	0	0		업무추진비	4,600,000	4,318,000	282,000
과년도수입	과년도수입	0	0	0		운영비	68,725,000	65,632,090	3,092,910
보조금수입	보조금수입	1,257,769,000	1,203,970,400	53,798,600	재산조성비	시설비	4,500,000	3,163,400	1,336,600
후원금수입	후원금수입	7,600,000	6,969,780	630,220	사업비	운영비	142,266,000	134,710,890	7,555,110
요양급여수입	요양급여수입	0	0	0		교육비	0	0	0
차입금	차입금	0	0	0		사업비	10,358,000	5,028,940	5,329,060
전입금	전입금	0	0	0	전출금	전출금	0	0	0
이월금	이월금	646,073	646,073	0	과년도지출	과년도지출	0	0	0
잡수입	잡수입	27,039,927	26,485,211	554,716	잡지출	잡지출	0	0	0
		0	0	0	예비비 및 기타	예비비 및 기타	671,000	662,477	8,523
세입 합계		1,293,055,000	1,238,071,464	54,983,536	세출합계		1,293,055,000	1,237,733,910	55,321,090
2017년 이월금 : 1,238,071,464원 – 1,237,733,910원 = 337,554원									

◇ **대표이사 황 혜** 2016년도 평강의집 시설회계 결산사항에 대해 의견을 요구하다.

◇ **이 사 김 순**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어 있다고 본다. 원안대로 받기를 동의하다.

◇ **이 사 고 애** 재청하다.

◇ **대표이사 황 혜** 참석이사 전원 동의에 의해 2016년도 평강의 집 시설회계 결산사항에 대한 심의 가결됨을 선언하다.

제5호 의안 : 2016년도 새로힘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회계 결산 사항

◇ **대표이사 황 혜** 제5안건, 2016년도 새로힘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회계 결산사항에 대해 심의 안건을 상정하다.

원본대조필 인

◇ **평강의집 사무국장** 새로힘 회계담당자 공석으로 평강의집 사무국장이 2016년도 새로힘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회계 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하다.

▣ **결산총괄표**

(단위 : 원)

세 입					세 출				
관	항	예산액	결산액	증감액	관	항	예산액	결산액	증감액
사업수입	사업수입	37,814,000	32,769,508	5,044,492	사무비	인건비	229,187,520	226,720,900	2,466,620
과년도수입	과년도수입	0	0	0		업무추진비	3,000,000	2,894,000	106,000
보조금수입	보조금수입	260,014,950	255,400,000	4,614,950		운영비	34,027,430	25,993,120	8,034,310
후원금수입	후원금수입	9,790,000	8,120,400	1,669,600	재산조성비	시설비	6,493,000	1,514,000	4,979,000
전입금	전입금	0	0	0	사업비	운영비	7,012,000	5,687,930	1,324,070
이월금	이월금	10,837,000	10,830,155	6,845		직업적응훈련사업비	3,286,000	807,100	2,478,900
잡수입	잡수입	1,541,000	1,458,988	82,012		직무능력훈련사업비	36,976,000	32,733,810	4,242,190
		0	0	0	과년도지출	과년도지출	0	0	0
		0	0	0	예비비 및 기타	예비비 및 기타	15,000	4,275	10,725
세입 합계		319,996,950	308,579,051	11,417,899	세출합계		319,996,950	296,355,135	23,641,815
2017년 이월금 : 308,579,051원 – 296,355,135원 = 12,223,916원									

◇ **이 사 박 철** 전체적으로 정확하고 투명하게 결산이 이뤄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함.

◇ **이 사 김 순** 원안대로 받기를 동의하다.

◇ **대표이사 황 혜** 2016년도 새로힘작업장 시설회계 결산 심의는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.

■ **기타사항**

◇ **이 사 박 철** 보고사항에서 행정소송 건이 있는데 소송비는 지정후원금에서 충당한다고 하면 생각을 해봐야 된다. 후원금의 목적은 종사자와 거주인 복리증진에 사용하는 게 마땅하다고 본다. 따라서 법인에 책임 있는 분이 소송비 일부를 부담해야 된다고 보다.

◇ **이 사 김 순** 지정후원금이라 후원금 사용 기준에 위배는 되지 않지만 시와 법인간의 소송 건으로 후원금을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보다.

◇ **이 사 고 애** 현재 법인의 재정을 보면 그렇게라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역설, 일단 정상화를 이루는 것이 우선이다.

원본대조필 ㊞

◇ 대표이사 황 혜 :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어렵다. 따라서 지난 이사회 의결대로 지정후원금으로 소송 건을 진행하겠다고 함.

■ 폐 회

◇ 대표이사 황 혜 : 2017년도 제1차 사회복지법인 에덴 이사회 폐회를 선언하다.
(회의 종료 : 2017. 3. 14. 16:10경)

상기 기록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기 위하여
이사회 참석 임원(이사, 감사) 전원이 기명날인하다.

2017. 03. 14.

사회복지법인 에덴
(사천시 곤양면 상평길 145)

대표이사 황 혜 (인)　　이 사 김 순 (인)

이 사 고 애 (인)　　이 사 박 철 (인)

이 사 최 성 (인)　　감 사 이 영 (인)

원본대조필 (인)